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13)

River & Culture



허철 | 우리협회 이사/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부회장
(hc5321@naver.com)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등 관련)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85, 회신일 2011. 11. 20)의 내용이다.

■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승객을 승선시킬 수 있는지?

■ 회답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

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유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영업구역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에서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유선



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데,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선사업 시설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유선 사업을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하는 유선장의 개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유선장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선 사업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 및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이 비치된 승강장설비,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대기시설·매표소·화장실을 갖추어야 하고, 야간운행을 하는 해당 유선장에는 1개 이상의 자기점화등과 승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절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유선장을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선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의 유선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각각의 유선장에 유선을 매어두거나 그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하선시키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선사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중간기항과 같은 유선사업의 운항형태를 금지하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중간 유선장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하선시킴으로써 그 승객의 왕복 운항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락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선사업자가 유선장을 복수로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구역 내의 출발 유선장에서 운

승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중간 유선장에서 승객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은 유선사업에서 허용하는 영업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는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영업구역 내의 중간 유선장에서 운송의 목적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에서 유락하는 사람을 하선시켜 다시 태우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을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유의사항**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